

정보공개서

코 & 타베

KOREA · THAILAND · VIETNAM
3國 3味 3色 길거리 포차 코&타베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F&B (주)프랭크 에프앤비
Frank F&B Corp.

인천광역시 서구 보도진로42번길 5(가좌동, (주)프랭크에프앤비)

TEL : 1544-7253, FAX : 032-678-1661 www.co-tabe.co.kr

가맹담당 부서: 영업부 , 가맹사업안내 전화 번호: 1644-7246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190426

최초등록일 : 2019.05.10

최종등록일 : 2024.11.11

Co & TABE

목 차

I .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설립일 등 일반정보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여부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사용할 영업표지 등에 대한 정보
5.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
6. 가맹본부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사업경력
7.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임직원 수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9.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II . 가맹본부 코&타베의 가맹사업 현황

1. 코&타베의 가맹사업 시작일
2. 코&타베의 가맹사업의 연혁
3. 코&타베의 업종
4. 코&타베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 및 직영점 총수
5. 코&타베의 바로 전 3년간 가맹점 수
6. 코&타베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7.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9. 코&타베를 경영하는 가맹지역본부에 관한 일반 정보
10. 코&타베에 지출한 바로 전 사업연도의 광고·판촉비
11.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12.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形)의 선고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구입 및 임차
2. 거래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4. 영업지역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연장·종료·해지 및 수정에 관한 사항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8. 경업금지, 영업시간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9. 광고 및 판촉 활동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VI.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절차
2. 분쟁해결 절차

VII.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관한 설명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4. 신용제공 등 내역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VIII.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 · 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4. 교육 · 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IX.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 보 공 개 사 항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설립일 등 일반정보

당사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 등에 관한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설립등기일	2012년 11월 21일	사업자등록일	2012년 11월 29일
법인등록번호	121111-0243154	사업자등록번호	130-86-76090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최근 3년간의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명칭/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가맹본부	(주)프랭크에프앤비	코&타베 외 11	심우창	1544-7253
특수관계인 (임원)	심우창(사내이사)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보도진로42번길 5(가좌동, (주)프랭크에프앤비)		
	현미숙(사내이사) 정동희(감사) 안의순 (사장)			

* 상기 표의 특수관계인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11조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서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회사 또는 개인을 말합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여부

당사는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사용할 영업표지 등에 대한 정보

귀하는 앞으로 아래의 내용을 사용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Co & TABE

명칭	상호	서비스표 등록 출원정보	서비스표 이미지
코&타베	코&타베 00점	등록번호 4015484420000	

5.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

가.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

당사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통한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별첨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9,267,532	6,004,493	3,263,092	34,942,344	3,721,976	3,008,530
2022	20,642,600	8,623,522	12,019,077	88,821,835	10,777,978	8,755,985
2023	48,038,341	29,489,338	18,549,002	104,476,150	11,375,388	8,529,924

나.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6. 가맹본부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Co & TABE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상호	주요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심우창	사내이사	2024.08.13~현재	(주)프랭크에프앤비	대표이사
	현미숙	사내이사	2024.08.13~현재	(주)프랭크에프앤비	사내이사
	정동희	감사	2024.05.27~현재	(주)프랭크에프앤비	감사

7.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임직원 수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0	115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코&타베 가맹사업 외의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기간	기타
가맹 본부	(주)프랭크에프 앤비	바पुरि	2013 0100465	외식	2013.05 ~ 현재	
가맹 본부	(주)프랭크에프 앤비	바पुरि죽애플	20150801	기타외식	2015.09 ~ 현재	
가맹 본부	(주)프랭크에프 앤비	바पुरि 뽕애플	20160167	기타외식	2016.03 ~ 현재	
가맹 본부	(주)프랭크에프 앤비	먼투썸피자	20160975	기타외식	2016.08 ~ 현재	
가맹 본부	(주)프랭크에프 앤비	바पुरिpho 베트남쌀국수	20170132	기타외식	2017.01 ~ 현재	
가맹 본부	(주)프랭크에프 앤비	바पुरि 수제식빵	20180084	분식	2018.01 ~ 현재	
가맹 본부	(주)프랭크에프 앤비	바पुरि 쉬는시간	20180864	기타외식	2018.08 ~ 현재	

Co & TABE

가맹 본부	(주)프랭크에프 앤비	코앤타베	20190426	기타외식	2019.04 ~ 현재	
가맹 본부	(주)프랭크에프 앤비	흑본당	20190751	기타외식	2019.07 ~ 현재	
가맹 본부	(주)프랭크에프 앤비	바푸리치킨	20201555	치킨	2024년 시작예정	
가맹 본부	(주)프랭크에프 앤비	최고마니	20211355	기타외식	2024년 시작예정	

9.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귀하가 당사와 코&타베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사가 귀하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권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견본이미지	등록일자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 만료일
상표 / 서비스표		2019.11.28	401548442 0000	(주)프랭크에 프앤비	2029.11 .28
권리 범위	가맹점 상호로 사용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 『코&타베』의 가맹사업 현황

1. 코&타베 가맹사업 시작일

당사의 코&타베의 가맹사업은 2019년 06월 06일입니다.

2. 코&타베 가맹사업의 연혁

코&타베의 가맹사업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소	비고
(주)비피알	코&타베	현미숙	2019.06~2020.07.1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41 보광빌딩3층, 4층	
(주)비피알	코&타베	현미숙	2020.07~2021.12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453번길 49, 1,2층 (삼정동)	소재지 변경
(주)에프앤 비	코&타베	현미숙	2021.12~2022.02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453번길 49, 1,2층 (삼정동)	상호 변경
(주)에프앤 비	코&타베	현미숙	2022.02~2022.06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 181(도당동)	소재지 변경
(주)프랭크 에프앤비	코&타베	심우창	2022.06~현재	인천광역시 서구 보도진로42번길 5(가좌동, 주)프랭크에프앤비)	상호, 대 표이사 변경

3. 코&타베 가맹사업의 업종

코&타베의 가맹사업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코&타베	주점	주점

4. 코&타베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 및 직영점 총 수

코&타베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 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6	16	0	8	8	0	4	4	0
서울	1	1	0	1	1	0	1	1	0
부산	0	0	0	0	0	0	0	0	0
대구	0	0	0	0	0	0	0	0	0
인천	3	3	0	1	1	0	1	1	0
광주	1	1	0	1	1	0	0	0	0
대전	0	0	0	0	0	0	0	0	0
울산	0	0	0	0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3	3	0	1	1	0	1	1	0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1	1	0	1	1	0	0	0	0
충남	3	3	0	1	1	0	1	1	0
전북	1	1	0	1	1	0	0	0	0
전남	2	2	0	1	1	0	0	0	0
경북	0	0	0	0	0	0	0	0	0
경남	1	1	0	0	0	0	0	0	0
제주	0	0	0	0	0	0	0	0	0

5. 코&타베의 바로 전 3년간 가맹점 수

코&타베의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한 가맹점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18	4	0	6	0	16
2022	16	0	7	1	0	8
2023	8	0	0	4	0	4

Co & TABE

6. 코&타베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코&타베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주)프랭크 에프앤비	바푸리	20130100465	외식	43/0	40/0	27/0
(주)프랭크 에프앤비	바푸리 죽앤죽	20150801	한식	4/0	4/0	2/0
(주)프랭크 에프앤비	바푸리 뽕앤까스	20160167	기타 외식	1/0	1/0	1/0
(주)프랭크 에프앤비	바푸리pho 베트남쌀국수	20170132	기타 외식	14/0	14/0	6/0
(주)프랭크 에프앤비	바푸리 수제식빵	20180084	분식	3/0	3/0	2/0
(주)프랭크 에프앤비	바푸리 쉬는시간	20180864	기타 외식	2/0	2/0	0/0
(주)프랭크 에프앤비	코&타베	20190426	기타 외식	16/0	8/0	4/0
(주)프랭크 에프앤비	흑본당	20190751	기타 외식	0/0	0/0	0/0
(주)프랭크 에프앤비	프랭크버거	20191192	기타 외식	189/0	461/0	591/0
(주)프랭크 에프앤비	바푸리치킨	20201555	치킨	0/0	0/0	0/0
(주)프랭크 에프앤비	최고마니	20211355	기타 외식	0/0	0/0	0/0
(주)프랭크 에프앤비	먼투썸피자	20160975	기타 외식	0/0	0/0	7/0

7.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연간평균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코&타베의 가맹점사업자 각각이 영업한 직전 사업연도의 지역별 연간 평균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Co & TABE

지역	가맹점 수	2023년 매출액(단위:천원,POS기준,VAT미포함)						산출 가맹점 수
		평균 매출액		상한 매출액		하한 매출액		
		매출액	3.3㎡ 당	매출액	3.3㎡ 당	매출액	3.3㎡ 당	
전체	4	267,716	4,594	346,613	7,080	181,906	2,576	3
서울	1	해당없음(5곳 미만)						1
부산	0	해당없음(5곳 미만)						0
대구	0	해당없음(5곳 미만)						0
인천	1	해당없음(5곳 미만)						1
광주	0	해당없음(5곳 미만)						0
대전	0	해당없음(5곳 미만)						0
울산	0	해당없음(5곳 미만)						0
세종	0	해당없음(5곳 미만)						0
경기	1	해당없음(5곳 미만)						1
강원	0	해당없음(5곳 미만)						0
충북	0	해당없음(5곳 미만)						0
충남	1	해당없음(5곳 미만)						0
전북	0	해당없음(5곳 미만)						0
전남	0	해당없음(5곳 미만)						0
경북	0	해당없음(5곳 미만)						0
경남	0	해당없음(5곳 미만)						0
제주	0	해당없음(5곳 미만)						0

* 상기 자료는 po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작성된 것입니다.

* 6개월(180일)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영업개월수가 6개월 미만인 가맹점은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액 및 수익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지역상황, 점주의 노력, 로스쿨, 레시피 준수 정도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기준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매출 및 미래 수입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년	4 개	1,259 일

Co & TABE

9. 코&타베를 경영하는 가맹지역본부에 관한 정보

당사는 코&타베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0. 코&타베에 지출한 바로 전 사업연도의 광고·판촉비

당사가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에 지출한 광고비 및 판촉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기 금액은 바पुर리, 바पुर리죽앤죽, 먼투썬피자, 바पुर리 뽕앤까스, 바पुर리PHO베트남쌀국수, 바पुर리수제식빵, 바पुर리와와샤브물갈비, 바पुर리쉬는시간, 코앤타베, 흑본당, 프랭크버거, 바पुर리치킨 등의 포괄 연간 광고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입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11.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은 아래의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예치기관명	담당지점	소재지	안내 전화번호
국민은행	부천내동지점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404	032-682-4813

- *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 신청 하여야 합니다.
- * 국민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예치방법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합니다. => 인터넷 뱅킹/부가서비스/ “가맹금인터넷예치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주식회사 프랭크에프앤비를 찾아 금액을 입력합니다.
- *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에 대해 가맹금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보상보험제도는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Ⅲ.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形)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코&타베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서는 아래의 금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은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최초 가맹금

1) 귀하(신규가입자)가 코&타베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당사에 지급하여야 할 최초 가맹금 및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 체결 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가맹비에 포함되는 사항은 당사와 귀하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비 총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 (단위:천원/VAT포함)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지급기한
가맹비	1.가입비 2.점포 입지선정 지원 및 선정점포 실사의 대가 3.가맹점 개설을 위한 영업비밀 전수 및 매뉴얼 기타 정보 제공의 대가	11,000	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교육비	가맹점 개점을 위한 교육·훈련의 비용 (점주1인,종업원2인)	5,500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시작 7일 이전
홍보 이벤트비	가맹점 개점을 위한 오픈 행사의 비용	5,500	홍보 및 판촉물 제작 후 반환 안됨. 단, 제작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 처리 후 반환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2) 귀하(가맹점양수자)가 코&타베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당사에 지급하여야 할 최초 가맹금 및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 체결 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Co & TABE

구분	내역	금액 (단위:천원/VAT포함)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지급기한
양수 가맹비	1. 양수 가맹점 운영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및 양수 가맹점 오픈을 위한 인력지원의 대가 2. 양수 시 제공되는 가맹점 운영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7,700	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계약체결 즉시
교육비	양수 가맹점 개점을 위한 교육·훈련의 비용	5,500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시작 7일 이전
홍보 이벤트비	가맹점 개점을 위한 오픈 행사의 비용	5,500	홍보 및 판촉물 제작 후 반환 안됨. 단, 제작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 처리 후 반환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나. 보증금

귀하(가맹점 양수자 포함)가 코&타베 가맹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당사에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은 없습니다.

다. 예치 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귀하(신규가입자) 또는 가맹점 양수자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액(단위:천원/VAT 포함)	
	신규 가입자	가맹점 양수자
합 계	22,000	18,700
가맹비	11,000	7,700
교육비	5,500	5,500
홍보 이벤트비	5,500	5,500
계약이행보증금	없음	없음

라. 최초 가맹금 외에 필요한 다른 비용

귀하(신규가입자)가 코&타베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데에 필요한 최초 가맹금 외에 다른 대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점 양수자는 당사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

Co & TABE

고 결정된 품목은 구입하여야 합니다.

(198m²기준/단위:천원/VAT포함)

품목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금액	3.3m ² 당			
외부공사	가맹본부 또는 자 체진행	별도	-	공사 시작 1 일전	소요비용 제외후 반환	
주방 기기,기물	가맹본부	27,500	458.3	설치 전 1일 이내		
인테리어	가맹본부 또는 자 체진행	105,600	1,760			
간판/Sine	가맹본부	별도	-	입고 전 1일 이내		설치장소기준 산정 m ² 당
가구	가맹본부	별도	-			의탁자 수 기준, 산정
초도물품	가맹본부	5,500	91.7			
합계	138,600					
* 가맹점사업자 인테리어 직접 시공 시 검수비: 3.3m ² 당 440천원(VAT포함) * 가맹점사업자 주방설비 및 기물 구입·설치 시 검수비: 3.3m ² 당 440천원(VAT포함) * 중부 이남 지역은 지방 경비 별도.						
* option : 음료냉장고, 제빙기, 오븐기 등 * 임대품목: POS시스템, 정수기 * 본사 무상 임대품목: 기타 소품 * 인,아웃테리어 공사 및 주방 구입은 점포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①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198m², 60평기준)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② 상기3.3㎡당 금액은 기준면적을3.3㎡로 나눈 금액을 기재한 것일 뿐 실제 크기에 따라 정률로 금액이 가감되지는 않습니다.
- ③ 그 밖의 필요 비용: 상기 비용 이외에 설비의 품질, 선택사항에 대한 추가 및 점포 건물에 따른 철거, 전기증설(분전반), (LPG/LNG)가스공사, 내외부 실사 닥트 추가입상공사, 화장실 공사, 소방방염공사, 냉·난방기, TV/음향기기, 테라스 기타 기본 외 별도 공사, 통신설비,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④ 자세한 비용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제공안내하고 있습니다.

마. 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 시 위약금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둘 중 빠른 시점)에 귀하의 귀책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귀하의 점포가 개업이 되지 않을

Co & TABE

경우 또는 귀하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에서 다음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을 상계처리한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반환되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해약 후 즉시 당사에 지급하여야 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 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24시간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20%
계약 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24시간 이후 7일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50%
계약 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7일 이후 가맹점 개점 이전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70%

* 상기 표에 따른 위약금은 가맹점설비(인테리어/설비 등)와는 별도로이며, 가맹점설비에 관한 위약금은 민법의 해약금 규정 또는 개별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규정에 따릅니다.

바.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코&타베 가맹점의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의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가맹점사업자	1)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를 설치할 장소를 선정합니다. 2) 당사는 점포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통행인의 수, 교통량,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통행인의 업종 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한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사.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에 대한 기준은 VIII.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항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가맹점으로서 효율적인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VIII.1. 등에서 정한 개점 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피한정 후견인이 아닐 것 만 20 세 이상일 것
종업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적정 수의 종업원을 고용하여야 하며, 종업원들이 당사의 경영	만 18 세 이상일 것

Co & TABE

	방침 및 지시를 따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자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관 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	---	--

아.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코&타베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에 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의 상세한 내역은 별표 2~7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 * 귀하는 당사가 지정한 필수 상품·자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필수 상품·자재의 품목/판매원/공급처 등은 당사의 경영환경, 시장상황, 품질개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귀하는 변경된 기준에 따른 상품·자재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 * 자세한 내역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 금전 지급방법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할 가맹금을 일시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양수자의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준 금액(단위:천원/VAT 포함)		납부일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예치 가맹금	22,000	18,700(일시불)	-
계약금	총액의 40%	-	계약일
중도금	총액의 30%	-	공사 착공일
잔금	총액의 30%	-	집기 입고 전

2. 영업 중의 부담

가. 비용 부담

귀하가 코&타베 가맹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의 내역과 그 반환조건 등에 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역	지급 대상 자	금 액 (단위:천원/VAT 포 함) 또는 산정기준	지급 기한	반환여부 및 반환조건
로열티	영업표지의 사용대가	가맹 본부	총매출 1.0% or 2.0%	익월 5일	영업표시 사용 대가의 후불 비용으로

Co & TABE

			(권장 원부재료 구매에 따라 차등 적용, 가맹계약서 참조)		반환되지 않음
개점 이후 교육비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맹점에 반드시 통지하여야 할 사항 및 꼭 필요한 의견수렴이 있을 경우 실시하는 수시교육에 대한 대가	가맹본부	전문 강사 초빙, 워크샵, 원부재료 비용 등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 청구.	청구 즉시	교육 실시 이후 반환되지 않음
광고·판촉 분담비	전국적인 판촉활동 및 신메뉴 출시 등의 마케팅 이벤트 행사에 대한 대가	가맹본부	POS상 월 매출액의 1% [V.8. 참조] (가맹계약서 참조)	매월 5 일	연말 결산하여 이 사용 부분 발생 시 반환
점포 환경 개선 비용	간판교체, 인테리어 (장비, 집기의 교체비용 제외한 실내건축공사)	가맹본부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 분담비용 20%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가맹본부 분담비용 40%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 즉시	VII.1 참조
지연 이자	본 계약에 규정된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지급기일을 경과한 미지급액에 대한 지연이자	가맹본부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		상품대금, 지체배상금, 위약금 등의 금전지급 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 의무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 가맹점사업자는 공동광고 및 판촉활동이 시행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공동광고 및 판촉활동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 평균 규모는

Co & TABE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직전 사업연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 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는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내역

- 1) 당사는 귀하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귀하의 점포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포 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점포의 점검은 재고관리, 회계처리, 서비스, 당사가 지정한 상품의 취급여부, 상품의 보관상태(냉장고 및 비품 보관상태 등), 제조상태, 위생상태, 매장 운영 전반 및 각종 설비관리 등의 상태점검을 포함합니다. 이때 당사는 귀하의 별도 승인 및 허락 없이 귀하의 매장상태를 점검(사진 촬영)할 수 있습니다.
- 3) 귀하는 매출정산, 물품발주 등 원활한 매장 운영과 당사가 실시간으로 매출동향 및 매출분석을 위해 매장 내 POS 시스템을 반드시 갖추고 사용해야 하며, 당사에게 매출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가. 계약연장이나 재계약과정에서의 추가 부담 비용

귀하는 당사와의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1년)을 체결하기 위해서 갱신비로 금 삼백삼십만원(W3,300,000/VAT포함)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계약기간 동안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로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당사는 갱신비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 사항

-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는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당사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협의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운영권 양도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수인 부담 비용(양수가맹비, 교육비, 홍보 이벤트비 등)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종료 후 조치사항

1)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본 계약의 종료 및 해지로 본 계약에 의해 허락되었던 가맹점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하고, 가맹점을 폐점함과 동시에 경영기밀, 장비 및 내외장시설 등의 사용을 즉시 중지 및 철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서, 매뉴얼 등 점포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를 즉시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동일 장소에서 코&타베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영시스템 내지 영업형태, 시설, 외관을 가지고 [코&타베 브랜드보호, 소비자혼돈예방, 경영 노하우 및 기밀보호예방 등] 사업을 하거나

Co & TABE

소비자가 코&타베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당사에게 사용허가를 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 및 기타 표시물을 즉시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마. 그 밖의 부담 비용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가. 귀하가 코&타베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 * 귀하는 지정거래처 상품·자재를 지정한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지정거래처 상품·자재의 품목/판매원/공급처 등은 당사의 경영환경 시장상황, 품질 개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귀하는 변경된 기준에 따른 상품·자재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 * 귀하는 상기 표에 기재된 상품·자재 중 품질관리, 유통관리, 공동물류 등을 위하여 당사가 지정한 상품·자재에 대하여 지정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나.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코&타베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2. 거래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가. 당사는 코&타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상기 경제적이익 수취 내역은 브랜드별 정확한 구분이되지 아니하여 총액을 기재하였습니다. 원부자재 항목은 당사가 운영하는 바पुर리, 바पुर리죽앤죽, 바पुर르뽕앤까스, 바पुर리pho베트남쌀국수, 바पुर리수제식빵, 바पुर리쉬는시간, 코애타베, 프랭크버거로부터 발생한 경제적이익입니다.

나. 당사가 코&타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코&타베의 브랜드의 맛과 메뉴얼 등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지정한 상품·자재를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별표 9 메뉴품목 리스트 참조	별표 9 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 회 7 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 후 가맹점운영권 제한 또는 2 회 서면시정 요구 후 계약 해지	가맹사업법의 해지 절차 준용

* 귀하는 코&타베 브랜드의 통일성 및 표준화 유지와 가맹점의 명성과 신뢰를 오인 내지 훼손시키지 않기 위하여 지정된 방법에 따른 상품·자재의 정량/정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의 변경된 상품·자재를 사용하거나 대체품을 첨가하는 방법으로 메뉴를 조리/판매하여서는 안 됩니다.

* 귀하는 당사가 정한 공통 메뉴를 판매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추가 메뉴의 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사와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당사는 각 가맹점의 매출 활성 및 수익증대,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해 정기

Co & TABE

또는 부정기적으로 신메뉴 및 계절메뉴 등을 개발하여 출시할 수 있으며, 귀하는 브랜드의 통일성 및 소비자의 만족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당사의 신메뉴 출시 방침에 따라 상기 메뉴 이외에 신메뉴를 판매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각 가맹점의 매출 활성 및 수익증대,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해 홀 판매, 포장 판매, 배달 판매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지역, 상권의 특성 등에 따라 판매 활동의 변경, 선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자재를 당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재판매, 제공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의 가격결정의 제한

귀하는 가맹점운영의 경영합리화와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표준화, 소비자와의 신뢰 등을 위하여 당사가 제공한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가 정한 권장가격을 당사와 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영업지역

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한국, 태국, 베트남 등 요리와 주류 및 식음료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종	코&타베	해당없음

나.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Co & TABE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가맹점 중앙을 기준으로 반경 300m (별도상권이나 대도시 중심상권은 반경 150m)	지역적 특성이 특수한 경우 영업지역을 지도로 별도 표시

다.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180~90일 이내에 변경 조건에 대한 서면 통지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라.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간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영업지역 준수를 권장하고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1)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2)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3)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 가맹사업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마. 귀하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귀하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코&타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 및 수정에 관한 내용

가. 가맹계약의 기간

본 계약은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갱신 시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는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시의 매 갱신 시점 마다 갱신비로 금삼백삼십만원(₩3,300,000/VAT포함)을 당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동안 가맹계약서 제29조에 따른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로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당사는 갱신비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는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당사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갱신 요구는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갱신)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다.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갱신비 납부 후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1년간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갱신비 납부 후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1년간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 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다. 계약 갱신거절 사유

귀하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 당사는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28조 4항 각호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①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②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필수 상품·자재/ 지정거래처 상품·자재 구매규정 위반으로 인한 사입 및 가맹사업 표준화 규정을 미 준수를 포함) ③ 당사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④ 당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라.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1)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의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귀하에게 2회 이상 통지하고 2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본 계약상의 계약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점포소재지, 점포의 규모 등 가맹점의 표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5조 2항 ~3항	29조 각호 및 31조 각호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6조 3항	
당사가 공급하는 상품 기타 점포설비 등에 부착된 당사의 영업 표지를 훼손·변경하거나 당사가 정한 범위 외에 사용하거나 당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6조 4항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육·훈련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참석을 거부하거나 불참하는 경우	10조 5항	
당사의 점포관리 기준 위반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1조 1항	
매장의 점검을 거부하는 경우	11조 2항	
필수 지정거래처 상품·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거래처 상품·자재를 타 거래처로부터 공급받는 등 상품 등의 조달과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5조	
상품·자재 대금 및 기타 대금의 약정한 납입기일을 경과하는 경우	15조 7항	
매뉴얼 준수를 하지 않아 영업의 표준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당사의 전체 가맹점에 브랜드 가치, 이미지 훼손 및 영업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16조 1항	
공통 메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하지 않거나 당사와 사전 협의 또는 승인 없이 추가 메뉴의 구성과 권장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16조 1항 및 2항	
신메뉴 판매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16조 3항	

Co & TABE

영업시간/ 영업일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8조	
근무복장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로부터 2회 이상 시정통보를 받은 경우	19조	
회계자료 등의 통지 및 제공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20조	
충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당사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21조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22조	
노후화 또는 위생·안전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시설 등의 교체·설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23조 2항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가맹점의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23조 6항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광고 및 판촉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비용 분담을 거부하는 경우	24조 1항 내지 3항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판촉활동을 하거나 팜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을 제작하여 브랜드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4조 5항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25조 1항	
기타 본 계약의 내용 및 별도 약정한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29조 22호	
가맹계약서 제8조 내지 제13조의 이행을 완벽하게 이루지 않아 개점이 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이에 따른 금전 채무지급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별도 약정한 날짜를 지키지 않는 경우	31조 1호	

2) 귀하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은 해지됩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0조 2항 각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30조 제1항 각호의 위반에 따른 당사의 시정 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Co & TABE

3) 당사 또는 귀하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은 해지됩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0 조 1항 각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사에 대하여 그 계약위반 사실을 명시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문서를 당사에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도 시정이 없으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계약에서 정한 영업지역에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개설하는 경우	32조 1항 각호
당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된 상품, 자재의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당사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마.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본 계약은 서면에 의한 상호 합의가 없으면 변경되지 않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가.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상속, 대행, 위탁 등

1)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양도, 전대, 사업자명의변경, 위탁경영 등(이하 “양도 등”이라고 합니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등의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양도 등의 의사표시를 당사에 통지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당사에게 먼저 양도 등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귀하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2)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양도 등의 의사표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승인을 거절할 수 없으며,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합니다.

Co & TABE

3) 귀하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수인 부담 비용 (양수 가맹비, 교육비, 홍보 이벤트비 등)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4)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진 영업의 양도는 당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당사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의 사망 시 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계의 의사를 당사에게 통지하고 본 가맹점 계약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영업을 승계할 자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이 승계의 의사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 일에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에 대해서는 본 계약상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되 양수 가맹비는 면제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가. 경업금지의 범위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기간 중에 당사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과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계약의 존속기간 및 계약 종료 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브랜드명 등을 사용하여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업금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한국, 태국, 베트남 등 요리와 주류 및 식음료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종

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코&타베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17:00 ~ 02:00 원칙	매월 26일 (2월은 24일) 이상 [매주 6일 이상 영업] 원칙
상권에 따라 당사와 협의하여 변경가능.	당사의 승인 하에 조정가능

Co & TABE

-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귀하가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휴업하기 3일전까지 당사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귀하의 사유가 정당할 경우 당사는 이를 승인합니다.
- ③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일 이상 휴업할 수 없습니다.

다. 권장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 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으며, 매장 규모 등에 따라 당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1)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코&타베의 브랜드 광고와 제품 광고 등을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 및 부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공동광고	전국단위 광고	광고비의 30%	광고비의 70% / 전국의 가맹점사업자수	가맹점사업자: POS 상 월 매출액의 1%를 익월 5일 납부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측 납부 금액 대비 가맹본부 부담 비율 가맹본부 집행(연말 결산)
	가맹점모집광고	100%	-	-
공동판촉	전국적인 판촉활동 및 신메뉴 출시 등의 마케팅 이벤트 행사	기획비용 부담	가맹점별 홍보물 제작 및 할인 비용 부담	개별 부담

* 귀하는 공동광고 및 판촉활동이 시행될 경우 반드시 공동광고 및 판촉활동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Co & TABE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단독 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귀하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그 비용의 일부를 당사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타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코&타베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귀하는 계약 과정 및 점포의 경영상 알게 된 당사의 영업상 비밀을 본 계약 성립시점부터 종료 후 2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사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당사가 작성한 교육 및 세미나자료, 영업 관련 편람 등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위약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의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금 등의 사유	관련 계약조문
귀하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가맹계약서 제22조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귀하는 위약별로 금삼천만원(₩30,000,000)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36조 제1항
귀하가 가맹계약 종료 또는 해지 이후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체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본 계약에서 명시한 매장규모의 3.3㎡당 금일만원으로 산출한 금액(지체일수×매장평수×₩10,000)을 지연배상액으로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36조 제2항
귀하가 필수 상품·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타 원부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냉장고 보관 시에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적발 즉시 위약별로 금오백만원(₩5,000,000)을 지급하여야 하며, 시정 전까지 적발 익일부터 위약별로 하루 당 금이십만원(₩200,000)씩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36조 제3항
귀하가 지정거래처 상품·자재에 대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하여 구입하지 않고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별도의 거래처를 통하여 상품·자재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별로 금오백만원(₩5,000,000)을 지급하여야 하며, 시정 전까지 적발 익일부터 위약별로 하루 당 금이십만원(₩200,000)씩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36조 제4항
귀하가 당사로부터 면제 또는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36조 제3항(필수 상품·자재 미사용) 또는 제36조 제4항의 규정(지정거래처 미준수)을 위반한 경우 제36조 제3항 또는 제36조 제4항에서 규정한 위약별 이외에 귀하는 가맹계약서 별표 3에서 면제 또는 지원받은 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36조 제5항
귀하는 정당한 해지 절차 없이 중도 계약해지 및 폐점을 할 경우 계약 잔여기간에 대하여 귀하의 매장규모의 3.3㎡당 금 오만원으로(1일당) 산출한 금액(계약 잔여일수 × 매장면적 × 50,000원)을 계약기간 미준수에	제36조 제6항

Co & TABE

따른 위약벌로 당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당사의 브랜드 코&타베와 취급 메뉴 및 영업형태, 매장 인테리어 컨셉 등이 확연히 다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또한 향후 영업비밀 침해 방지 등과 관련하여 당사가 제시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당사 또는 당사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당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36조 제7항
귀하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당사 또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36조 제8항
가맹계약서 제36조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한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제9항

Ⅵ.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절차와 소요기간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실제로 귀하의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25~35일 정도로 예상되며, 그때까지의 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점 오픈 절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접수(1644-7563)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및 응대	즉시	
가맹사업에 대한 설명 및 상담	-담당자 상담 -정보공개서 및 첨부서류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즉시	
최종협의	-가맹점 개설 승인 및 확정 -가맹계약서 제공 -점포임대차 및 인·허가 신청	인·허가 등 소요시간	
가맹계약	-가맹계약 체결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가맹금 등 지급	-가맹금 입금 (지정 국민은행 예치기관에 예치)	가맹계약서 제 공 후 14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의사결정, 1차 시장조사, -입지 지역분석 및 확정	3일~5일	
점포실측/설계	-투자비 산출	3일 ~ 5일	
실내외 공사착수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3일	총계약금의 40%
인테리어 공사	-인테리어 공사 실시	15일~20일	총계약금의 40% (공사완료 후 잔금 20%)
교육실시	-점포운영교육 실시	5일~6일	
가맹점 오픈	-가맹점 오픈 및 영업개시	즉시	

[주1]

1. 상기일정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과정에서 시장 상황이나 개별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점포개발은 점포를 미보유한 경우에만 실시되며, 상권분석 또한 필요 시 실시합니다.

2. 분쟁해결 절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당사의 임직원을 포함합니다)와 귀하 양 당사자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맹거래사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재판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관한 설명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비용 ○인테리어공사 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가능	

			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 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시 절 차> ○ 가맹점 사업 자 의 비용 청구 (공사 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 는 서류 첨부)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 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 담 액 의 30%, 2차 : 1차 지 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 담 액 의 30%, 3차 : 2차 지 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 담 액 의 40%)		
--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개설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판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슈퍼바이저 등을 파견하여 가맹점의 경영지도
 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 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지도를 담당할 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이 기재)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자가 경영지도 결과 및 개선방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구두, 전화, 팩스, 이메일, 서면 등으로 제시함	가맹본부 부담	문의: 운영관리부 및 영업부 (1644-7256)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지도를 담당할 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이 기재)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자가 경영지도 결과 및 개선방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구두, 전화, 팩스, 이메일, 서면 등으로 제시함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운영관리부 (1644-7256)

4. 신용제공 등 내역

해당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 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당없음			

Ⅶ.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 내용

가. 개점 전 교육·훈련

당사는 코&타베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철저한 메뉴실습과 매장운영교육을 현장(가맹점)에서 시행합니다.

- 지속적인 메뉴개발과 신메뉴 출시 및 행사이벤트 지원
- 이수과정 : 총 5~6일 교육 (현장교육)
- 교육시간 :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교육과정	교육 일정	대상	소요 시간	필수 여부	담당자	장소
이론 교육	프랜차이즈 시스템	점주	1H	선택	교육팀	현장교육 (가맹점)
	본사 및 개점 시스템	점주	1H	필수		
	영업 및 마케팅	점주	1H	필수		
	서비스	점주, 홀직원	1H	필수		
	조리	주방직원	4H	필수		
	운영	점주	1H	선택		
	총 이수시간		12H			
실습 교육	서비스	점주	1H	필수	교육팀	현장교육 (가맹점)
	조리	점주, 주방직원	18H	필수		
	운영	점주	1H	필수		
	총 이수시간		20H			
현장 실습	오픈 전 현장체험 (1~3일)	점주, 주방직원			교육팀	가맹점

교육과정	교육 내용
이론교육	1. “가자 성공창업으로”-전반적인 창업노하우 교육 2. “오픈 전 이것만 준비하자” - 오픈 전 점주 준비사항 교육(위생교육, 영업 신고 등.) 3. “창업의 성공은 매장운영관리에 따라 좌우 된다”- 매장운영교육- 세무/고객응대, 접대 등. 고객서비스 배양/ 직원관리/ 포스 등, 전반적인 교육 4. “함께하는 코&타베 매장 홍보”- 매장홍보의 중요성 일깨워주는 프로그램
실습교육	1. 코&타베 식자재 종류, 주문, 납품방법 2. 코&타베 식자재 셋팅 방법 3. “우리도 전문요리사”

* 귀하는 상기 표에 기재된 개점 전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과정을 거치

Co & TABE

지 아니한 자는 귀하의 점포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 * 당사는 보수교육에 대한 교육계획, 특별교육이 실시되는 시간 및 장소, 모든 교육 및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산출근거 등을 정하여 귀하에게 서면, 유선(fax, E-mail)으로 통지합니다.
- * 귀하는 필요한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당사에게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할 인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 사용하는 식자재 비용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나. 개점 이후 교육·훈련

당사는 효율적인 코&타베 가맹점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이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명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일정	교육시간	필수여부	정원
가맹점주 교육	가맹점주	경영관리, 경영관리실무, 세무회계, 마케팅전략, 리더십, 광고, 판촉, 고객관리, 조리교육	필요 시	이론교육 (2H) 조리교육 (10H)	필수	전가맹점
매니저 교육	매니저	경영관리, 고객관리	필요 시	2H	선택	전가맹점
일반 직원 교육	점주 및 매니저 외 전 직원	서비스 교육, 접객 마인드 교육	필요 시	2H	선택	전가맹점
신규 직원 교육	신규 직원	브랜드 교육, 서비스교육	필요 시	3H	선택	전가맹점
주방 교육 (외식업)	주방 인원	신 메뉴 출시 교육	수시	5H	필수	전가맹점

- * 당사는 코&타베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맹점에 반드시 통지하여야 할 사항 및 꼭 필요한 의견수렴이 있을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귀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교육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개점 이후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전문 강사 초빙, 워크샵, 원부재료 비용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귀하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o & TABE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교육·훈련의 최소 이수시간(이론교육, 조리교육, 운영교육 및 현장교육을 포함)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훈련에 불참하거나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개점승인이 거부되거나 보류될 수 있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천원/VAT포함)	비고
개점 전 교육	최소 이수 교육	30~35시간	5,500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교육	가맹본부가 정함	당사가 비용을 정하여 서면, 유선(fax, E-mail)으로 통지함.	필요시 실시
	특별교육	개별협의	교육에 사용하는 식자재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함.	가맹점사업자 의 요청시
개점 이후 교육	수시 교육	개별협의	전문 강사 초빙, 워크샵, 원부재료 비 용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귀하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필요시 실시

* 가맹점사업자는 개점 후 수시교육이 실시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교육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주, 주방직원, 홀직원입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가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개점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Ⅸ.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해당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해당없음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관리팀(1544-7253)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과(02-2023-4010)** 또는 **가맹유통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cotabe.c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끝 -

[별표 1] 재무상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별표 1-1]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별표 2] 인테리어 설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별표 3] 주방설비 및 기물

* 주방설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 주방설비는 매장환경 및 매장규모, 운영형태 등에 따라 추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주방기물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 주방기물은 매장환경 및 매장규모, 운영형태 등에 따라 추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별표 4] 간판 및 사인물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별표 5] 포스 시스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별표 6] 테이블 / 의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별표 7] 운영 소모품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별표 8] 원부재료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상기 상품·자재를 명시된 판매원의 품목을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거래처를 임의 변경할 경우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상품·자재의 품목과 판매원/거래처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협약과 공지를 통한 메뉴 추가 및 조리법 등의 변경에 따른 필수품목 변동시 가맹점 주문발주 프로그램에 반영합니다.

[별표 9] 메뉴 품목리스트

*메뉴 품목 및 가격은 신메뉴 출시 및 매출추이, 원부자재의 가격추이에 따라 협약과 공지를 통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셋트류

TABE SPECIAL 1

샐러드류 선택1 + 수살후라이드or
치킨강장or큐브스테이크 선택1

TABE SPECIAL 2

샐러드류 선택1 +
산더미불고기or팟커리치킨 선택1

TABE SPECIAL 3

샐러드류 선택1 +
돈까스or치킨or스파게티 선택1

이색특화메뉴

팟카파오느어(소고기숙주볶음)

까이팟맷마무잉(고추기름치킨)

팟커리치킨

카오소이(카레+닭육수)

똥카까이

짜조

호이신불고기&꽃빵

분짜



꺄바로우
라초오센즈(두반장바지락)
카오팟사파룻(파인애플볶음밥)
팟타이
미고랭파스타
체즈호어(가지튀김)
숯불반세오



화덕바베큐류

직화매운바베큐(봉+왕)
화덕매운닭갈비&로제파스타
(치즈추가시 3,000원)
화덕매운닭갈비&라면사리
(치즈추가시 3,000원)
화덕매운삼겹&라면사리
(치즈추가시 3,000원)
화덕매운닭갈비&떡사리
(치즈추가시 3,000원)
화덕매운삼겹&떡사리
(치즈추가시 3,000원)

Co & TABE



별미류

큐브스테이크
직화루상복음
수제소세지모듬
숯불볶음우동&꽃빵
치킨떡볶이
직화우뽕닭발
삼겹살면
불꽃등오징어떡볶이
쟁반순대떡볶이
쟁반튀김떡볶이

치킨류

순살버터갈릭후라이드치킨
순살후라이드치킨
순살매운치킨강정
돈까스파게티
허니버터갈릭포테이토



과일샐러드류

돈까스샐러드
치킨샐러드
연어샐러드

디저트

메론+파인애플
연유꽃병튀김
후식딸빙수

맥주/소주

빙맥주
생맥주(500cc)
생맥주(1700cc)
생맥주(2700cc)
소주
과일소주

양주

진 > 불베이 사파이어
리큐르 > 예거마이스터/깎루아
보드카 > 애플루트
데킬라 > 호세 쿠엘보
럼 > 바카디블랙/모히토
위스키 > 잭다니엘

기타

토닉워터
핫식스
오렌지쥬스
우유
쿨피스
레몬슬라이스
초코예뽕(초코맛)
콜라/사이다/환타

피자류

불고기피자
페퍼로니피자
슈프림피자

탕류

얼큰산더미불고기
해물매운짬뽕탕
덩어리김치찌개
부대찌개떡볶이
오뎅탕

식사류

숯불차이나퐁
숯불나가사끼퐁
팜퐁해장라면
김밥라야볶음밥
화이트사리(또띠아,소스)
우동사리



Co & TABE

[별표 10] 관리·감독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No.	점 검 항 목	상 태			평 가
		상	중	하	
1	복장 및 고객응대 태도				
2	매장 내외부 청결상태 진행				
3	집기 및 테이블 위치 숙지 여부				
4	테이블 세팅 숙지 여부				
5	고객접객 진행 여부				
6	고객 입·퇴점 시 인사 시행 여부				
7	고객 컴플레인 시 직원 역할 수행 여부				
8	피크타임 시 직원과 점주의 역할분담 및 업무 진행				
9	직원 및 점주의 영업에 임하는 자세 및 열의				
10	정상오픈영업이 가능할 정도의 조리 가능 여부				
11	조리매뉴얼을 준수하여 조리하는지 여부				
12	식자재 정리 및 주방청결을 준수 여부				

[별표 11] 예치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08.1.31>

(앞 쪽)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 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가맹 본부	상호명(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예치가맹금		₩(금 원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가맹본부용)

“본인(____)은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주)프랑크에프앤비』의 『코&타베』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고 그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 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서 주요 목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정보공개서 변경사항(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최종등록일:년 월 일	
제공 일시	년 월 일 (시분)		
제공 장소			
수령자	성 명		수령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주 소		
	전화 번호		
가맹본부	서명(또는 기명날인)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가맹희망자용)

“본인(____)은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주)프랭크에프앤비』의 『코&타베』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고 그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 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서 주요 목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정보공개서 변경사항(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최종등록일: 년 월 일
제공 일시	년 월 일 (시분)		
제공 장소			
수 령 자	성 명		수령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주 소		
	전화 번호		
가맹본부	서명(또는 기명날인)		